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외부유출 금지
- 전문개재 금지
- 원본촬영 금지

피고인 최[](개명 전 성명 '최[]', 이하 개명 후 성명인 최[]으로 한다)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안[]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피고인 정[]은 2013. 1. 6.부터 2013. 2. 24.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 소속으로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보좌하고,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으로, 2015. 1. 23.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접수 및 보고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

항, 메시지 전달 등의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 (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 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죄[■], 피고인 안[■] 대통령의 공모범 행】

I.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

2015. 7.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

하여 한류 화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안[■]은 2015. 7. 20.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 부회장 김[■], CJ그룹 회장 손[■],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 LG그룹 회장 구[■], 한화그룹 회장 김[■], 한진그룹 회장 조[■]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안[■]은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최[...]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2.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 경 리[...]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에게 '리[...]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정[...]은 피고인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안[...]은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안[...]은 2015. 10. 19.경 이[...]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안[■]의 지시를 받은 최[■]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
[■]에서 청와대 행정관 이[■],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 사회공헌팀장 이[■]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등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리[■]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이[■] 등은 회의를 마치고 전경련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은 2015. 9. 말경부터 10. 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 사무총장을 '이[■]', 이사를 '이[■]'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안[■]은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 이사는 장[■], 이[■], 송[■], 조[■], 김[■]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안[■]의 지시를 받은 최[■]은 2015. 10. 22. 오후 위 [■]

[REDACTED]에서 이[REDACTED], 이[REDACTED], 이[REDACTED]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신[REDACTED],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하[REDACTED]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전무 박[REDACTED]는 2015. 10. 23. 아침에 전경련 회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REDACTED]은 하[REDACTED]에게 문체부의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안[REDACTED]의 지시를 받은 최[REDACTED]은 2015. 10. 23. 위 [REDACTED]
[REDACTED]에서 이[REDACTED], 이[REDACTED], 이[REDACTED] 문화체육비서관 김[REDACTED]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최[REDACTED]은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이[REDACTED], 이[REDACTED]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

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죄[■]은 같은 날 이[■]에게 전화하여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이[■]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죄[■]은 2015. 10. 24. [■]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죄[■]이 내정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장 김[■], 사무부총장 김[■]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김[■]은 피고인 죄[■]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등 전경련 관계자와 죄[■]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재단법인 미르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안[■]은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이[■]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은 박[■], 이[■], 이[■] 등에게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피고인 안[■]과

최[■]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LS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이[■]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안[■]은 최[■]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이[■]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SK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이[■]은 하[■]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

[REDACTED]에 있던 하[REDACTED]은 소속 직원인 김[REDACTED]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REDACTED]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REDACTED]에서 김[REDACTED]에게 SK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김[REDACTED]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체부에서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미르¹⁾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REDACTED], 피고인 안[REDACTED]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REDACTED]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2015. 10. 27. 설립

3.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정[■], 사무총장을 김[■]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에게 보냈다.

한편, 피고인 안[■]은 같은 달 11. 및 20. 대통령으로부터 '정[■] 이사장, 김[■] 사무총장, 정[■] 감사, 이[■]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안[■]은 2015. 12. 중순경 전화로 이[■]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은 그 무렵 전경련 직원들을 통하여,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전경련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이[■]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피고인 안[■]과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²⁾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현대자동차 대표 김[■]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II.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행

피고인 최[■]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이[■]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

2) 2016. 1. 13. 설립

령비서실 정[■]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문[■]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정[■]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안[■]은 2014. 11. 27.경 대통령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에서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은 2014. 12. 2.경 피고인 안[■]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청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김[■]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안[■]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와 김[■]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

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한편, 피고인 최[■]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으로부터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 상당의 샤플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받았고, 2016. 5.경에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

피고인 최[■]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김[■], 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김 [REDACTED]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안 [REDACTED]은 2016. 2. 15.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REDACTED]에서 정 [REDACTED]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 [REDACTED]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 [REDACTED]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안 [REDACTE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 [REDACTED]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 [REDACTED] 부사장 [REDACTED]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고, 김 [REDACTED]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³⁾과 3개의 중소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3) [REDACTED]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redacted], 피고인 안[redacted]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redacted]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III.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redacted]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고 한다)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케이스포츠 사무실 인근인 서울 강남구 [redacted]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TBK, 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최[redacted]은 케이스포츠 과장 박[redacted] 등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

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안[■]은 2016. 3. 10.경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 신[■] 회장과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 3. 14. 서울 종로구 [■]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신[■]의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신[■]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이[■]은 상무인 이[■]에게 사장인 소[■]와 의논하여 위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이[■]은 소[■]에게 이[■]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소[■]와 함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은 2016. 3. 중순경 정[■], 박[■] 및 더블루케이 이사 고[■]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정[■], 박[■] 및 고[■]는 소[■] 이[■]을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안[■]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정[■]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소[■], 정[■]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REDACTED] 등 롯데그룹 관계자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 [REDACTED]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되겠느냐'는 의사를 정 [REDACTED]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 [REDACTED]에 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REDACTED]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 [REDACTED]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 이 좋겠다'고 말하며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 [REDACTED], 피고인 안 [REDACTED]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 [REDACTED], 부회장 망 이 [REDACTED], 사장 소 [REDACTED]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IV.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죄[■]은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 과장 등에게 케이스포츠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포스코 그룹 회장 권[■]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안[■]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횡[■] 경영지원본부장(사장)에게 지시하고, 횡[■]은 2016. 2. 24. 조[■]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에서 더블루케이 대표 조[■] 이사 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를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죄[■]은 조[■] 노[■]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케이스포츠 정[■] 사무총장, 박[■] 과장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에서 피고인 안

[]을 만나 '횡 []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안[]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VIP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정[], 박[]에게 말한 다음, 황[]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조[]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2016. 3. 초순경 박[]과장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 상무 등을 직접 []을 방문하여 고[]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P&S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redacted] 피고인 안[redacted]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권[redacted] 황[redacted]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V.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redacted]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redacted] 및 김[redacted]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최[redacted]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redacted]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운피의 지인인이[redacted]와 피고인 최[redacted]의 측근 김[redacted]의 처인 신[redacted]을 추천받았다.

피고인 안[redacted]은 2015. 1.경 및 2015. 8.경 대통령으로부터 '이[redacted]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redacted]도 이[redacted]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케이티 회장인 황[redacted]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redacted]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

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은 이[...]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는 비서실장 구[...]에게 지시하여 2015. 2. 16.경 이[...]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2015. 10.경 및 2016. 2.경 피고인 안[...]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황[...]에게 연락하여 이[...]를 케이티의 IMC 본부장으로, 신[...]을 IMC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는 피고인 안[...]의 요구대로 이[...]와 신[...]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안[...]은 2016. 2.경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와 이[...]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황[...]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과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

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한 후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 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VII.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최[■]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과 과장 박[■]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최[■]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GKL'이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에게 '대통령께 GKL과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안[■]은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

를 소개해줘라. GKL의 대표이사 이[REDACTED]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REDACTED]을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조[REDACTED]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안[REDACTED]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 경 이[REDACTED]에게 전화하여 조[REDACTE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REDACTED]과 협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안[REDACTED]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REDACTED]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서울 중구 [REDACTED]에서 문체부 2 차관 김[REDACTED]을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인 정[REDACTED]과 조[REDACTED]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REDACTED]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최[REDACTED]은 조[REDACTED]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REDACTED]에게 2016. 1. 28. 서울 강남구 [REDACTED]에서 이[REDACTED]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그들을 통해 이[REDACTED]에게 GKL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REDACTED]는 더블루케이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GKL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REDACTED]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조[■]은 김[■]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GKL-선수-더블루케이 3자 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GKL은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GKL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로부터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의 공모범행 - 강요미수】

피고인 최[■]은 2015. 1.경 측근인 차운[■] 및 차운[■]의 지인인 광고기획자 김[■]과 함께 광고기획, 문화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모스코스(대표이사 김[■], 이하 '모스코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 받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최[■]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이하 '포레카'라고 한다)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포레카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모스코스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컴투게더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엠허브가 이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그 인수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최[■]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피해자 한[■]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최[■]의 측근인 포레카 대표이사 김[■]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안[■]은 2015. 2. 17.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권[■]과 김[■]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포스코 회장 권[■]에게 전화하여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2015. 3. 5.경 김[■]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의 요구를 받은 김[■]은 2015. 3. 중순경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에서 피해자 한[■]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015. 3. 하순경 엠허브가 입찰을 포기하여 컴투게더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자 피고인 안[■]은 재차 김[■]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아라’고 말하고, 김[■], 김[■] 등은 피해자 한[■]에게 ‘청와대 어르신은 안[■] 경제수석이다.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2015. 6. 11.경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

자 한[■]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 최[■]은 차[■], 김[■]에게 '한[■]가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말하고, 차[■]은 피해자 한[■]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을 통해 피고인 최[■]의 말을 피해자 한[■]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송[■]은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로 피해자 한[■]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협박하면서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는 2015. 8. 31.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최[■], 피고인 안[■]은 송[■], 김[■], 김[■], 차[■]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한[■]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정[■], 대통령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REDACTED]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REDACTED]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REDACTED]에서,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피고인과 최[REDACTED]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REDACTE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REDACTED]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 최[REDACTED], 피고인 안[REDACTED]의 단독범행】

I. 피고인 최[REDACTED]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경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는 2016. 1. 12.경 설립된 이후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지급 받더라도 실제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 더블루케이에서는 연구용역제안서조차 작성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측근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근무하는 박[redacted]으로 하여금 더블루케이 명의로 연구용역비 406,200,000원 상당의 '시각장애인스포츠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제안서 및 연구용역비 307,200,000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제안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71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정[redacted] 등이 위 연구용역제안서가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독일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김[redacted] 및 장[redacted]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redacted]의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김[redacte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신[redacted](김[redacted]의 처)과 소[redacted](김[redacted]의 후배)은 장[redacted]와 함께 위 컴퓨터 5대를 [redacted] 밖으로 반

출한 뒤 구리시 [REDACTED]에 있는 소 [REDACTED]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이후 소 [REDACTED]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후배인 구 [REDACTED]에게 위 컴퓨터 5대를 전달하면서 '컴퓨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였고, 구 [REDACTED]은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REDACTED]로 위 컴퓨터 5대를 옮긴 후 그 무렵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SSD카드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REDACTED], 장 [REDACTED], 소 [REDACTED], 신 [REDACTED], 구 [REDACTED]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II. 피고인 안 [REDACTED]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1. 이 [REDACTED]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전경련 부회장 이 [REDACTE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피고인 안 [REDACTED])은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모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향후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 [REDACTED]의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이 [REDACTED]은 직원을 시켜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REDACTED]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전문 처리 업자를 통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김[]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자신의 보좌관인 김[]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이사인 김[]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은 2016. 10. 21.경 서울 중구 []에서 검찰 조사를 앞둔 김[]을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하였다.

김[]은 다음날 22:00경 서울 서초구 []에서 김[]을 다시 만나 자신이 작성한 「미르 재단 소속 관계자들 및 K스포츠 재단 전 이사장 정[]의 검찰 진술 내용을 기재하고 검찰 조사시 대응 방안을 기재한 문건」을 김[]에게 전달하며 「검찰에 출석하여 안[]과 최[]을 모른다고 하라, 재단의 임직원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전경련과 협의하여

선임한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한편, '안[redacted]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삭제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김[redacted]으로 하여금 청와대 이[redacted] 행정관으로부터 수신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이사 명단이 기재된 이메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redacted]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